

산업간호와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노동부령 제308호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73호, 2008. 8. 21.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되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장에서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전인증·안전검사 방법 및 절차, 유해인자별 허용기준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같은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확대(안 제30조제5항)

- (1)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대상이 되는 장소에 산업재해 발생의 빈도가 높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장소와 프레스·전단기를 사용하는 장소 등이 제외되어 왔음.
- (2)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와 프레스·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함.

나. 안전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8까지 및 별표 20)

- (1) 법률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 시행을 위하여 안전인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의 종류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로 구분하되, 개별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 경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안전인증 또는 검사·검정을 받은 경우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며, 안전인증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기준 등을 정함.

다. 자율안전확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 (1)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인증대상이 아닌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한 후 대상 제품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라. 안전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73조, 안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 (1) 법률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 등 새로 도입된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안전검사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유형별로 검사 주기를 정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는 검사주기 만료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요건 및 방법 등(안 제74조의2 신설, 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

- (1) 법률에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 및 방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검사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기계·기구별 검사주기는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정하며,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담당하는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및 업무수행기준을 정함.

바. 유해인자별 허용기준(안 제81조의4 및 별표 11의3 신설)

- (1)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일부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유해인자별 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납, 니켈, 벤젠 및 석면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 13종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기준을 정함.

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그 이행의 확인(안 제121조 및 제124조)

- (1)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완화되었던 사업주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복원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심사 및 확인방법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해당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제조업의 경우 그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⑤ (생략)</p> <p>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한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p>	<p>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 _____ _____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_____ _____ — 1개월 _____ —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 _____,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_____.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_____ _____ _____지정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② (생 략)</p> <p>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⑤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⑥영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⑦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당해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제18조의2(2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안전관리대행기관이 2이상의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대행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해당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상호협의를 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_____ 받으려는 _____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_____.</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_____ 접수되면 _____ 지정 여부 _____ 21일 이내 _____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_____ 변경하려는 _____ 관할 지방노동청장 _____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_____.</p> <p>⑥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_____ 변경하려는 _____ 관할 지방노동청장 _____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_____.</p> <p>⑦ _____ 해당 _____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_____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 _____.</p> <p>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_____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 _____ 대행하려는 _____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노동청장은 _____ 지정 여부 _____.</p> <p>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9조의3에 따라 _____ 받으려는 _____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_____.</p>

현행	개정안
<p>1. ~ 7.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 ④ (생략)</p> <p>⑤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등) ① _____ 지방노동청장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_____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_____</p>
<p>1. ~ 8. (생략)</p> <p>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p>
<p>10. ~ 15. (생략)</p> <p>〈신설〉</p> <p>⑥ (생략)</p> <p>제37조(교재등) ①사업주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38조(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라 함은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10. ~ 15. (현행과 같음)</p> <p>16. <u>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하는 장소</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중 교육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의 명단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9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직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1. 관리책임자</p> <p>2. 3. (생략)</p> <p>4. 산업보건직</p> <p>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p> <p>6.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_____의사인 _____의 보건관리자 _____의 신규교육 _____의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_____.</p> <p>1. 안전보건관리책임자</p> <p>2.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 _____.</p> <p>③ 직무교육 _____ 교육방법, 그 밖에 교육에 _____.</p> <p>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직무교육 _____ 선임신고 시 전직 전 _____ 제출하면 해당 _____.</p> <p>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p> <p>②영 별표 4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산업보건인가 당해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p> <p>③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면제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이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_____ 제8호의 어느 하나 _____ 직무교육 중 _____</p> <p>② _____ 각 목의 어느 하나 _____ 제5호에 따라 _____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_____ 교육내용 중 _____ 해당 _____ 직무교육 중 _____</p> <p>③ _____ 각 호의 어느 하나 _____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_____ 직무교육 중 _____</p> <p><삭 제></p>
<p>제8장 보호구의 검정</p>	<p>제8장 자율안전확인인 신고</p>
<p>제60조(검정대상 범위)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갑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경은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6. 영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면은 용접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7. 영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진마스크는 분진·미스트 또는 흙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8.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증기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9. 영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 	<p>제60조(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증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현행	개정안
<p>10. 영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송기마스크는 산소 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잠수용을 제외한다)</p> <p>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p>	
<p>제61조(보호구의 검정신청) ①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능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장에서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규격 및 사용방법설명서 2부 2. 조립도·부품도·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에 한한다) 6. 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구에 대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별표 9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검정을 위하여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검정기관은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검정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p> <p>④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보호구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그 제조·수입자에게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신고 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p>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62조(검정방법 등) ①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자가 제조·수입하는 보호구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p>	<p>제62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6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수거·파기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제65조(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제60조 각호의 보호구별로 30일 이내(제60조 제1호·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는 60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의 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서 검정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65조의2(검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0조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p> <p>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중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검정유효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p>	<p>〈삭 제〉</p>
<p>제67조(합격의 표시) ①법 제3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쉽게 제거되지 아니하도록 금속박판에 각인하여 별도로 붙이거나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68조(수거검정의 실시)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검정(이하 이 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실시할 수 있다.</p> <p>1. 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p> <p>2. 그 밖에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보호구 2개 이상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p> <p>제69조(준용) 제46조의6 및 제46조의9 내지 제46조의13의 규정은 보호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호장치"를 "보호구"로 보고, 제46조의9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제46조의11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제46조의12중 "법 제33조제8항"을 "법 제35조제7항"으로, 제46조의13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본다.</p> <p>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① (생략)</p>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1. 2.(생략)</p> <p>3. 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p> <p>4.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p> <p>5.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p> <p>〈신설〉</p> <p>③ (생략)</p> <p>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삭제〉</p> <p>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제1항에 따른 _____ _____ 제3항에 따른 _____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_____ 각호</p> <p>1. 2.(현행과 같음)</p> <p>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p> <p>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p> <p>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p> <p>6.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_____ 노출기준 설정대 _____ 상 _____ 각호 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1조의4(허용 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p> <p>②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p>

현행	개정안
<p>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의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p>③ (생략)</p> <p>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3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p>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p> <p>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 _____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_____ _____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_____ _____ 작업은 _____ 2.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_____ _____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보건규칙 제3조에 따른 _____ _____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_____ 노출수준이 _____ _____ 작업장 <p>③ (현행과 같음)</p> <p>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_____ _____ 제93조제1항 에 따른 _____ _____ 6개월 _____ _____ 3개월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1의4 제1호 _____ 발암성 물질만 해당 한다 _____ 2. 별표 11의4 제1호 _____ 발암성 물질은 _____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현행	개정안
<p>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p>	<p>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p> <p>제10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의료법」에 따른 -----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p>
<p>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공단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p> <p>3.·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 법 제43조의2에 따라 -----.</p> <p>1. (현행과 같음)</p> <p>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p> <p>3.·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 해당 재해 ----- 제출을 -----.</p>

◎ 대통령령 제20973호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되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 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사업주에게 발암성 물질 등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등의 종류와 작업장 내에서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안 제28조)

- (1) 법률의 개정으로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2) 이에 따라 현행 검사·검정 대상기계·기구 24종과 추가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하여 28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정함.

나.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안 제28조의2)

- (1) 법률의 개정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2) 이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안전기 등 현행 검사·검정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11종과 추가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원심기, 공기압축기 및 곤돌라 3종을 포함하여 14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정함.

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안 제28조의3)

- (1)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 사용단계에서 실시하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2) 이에 따라 승강기·보일러 등 5종을 제외한 현행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11종과 추가로 안전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출성형기를 포함하여 모두 12종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정함.

라.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안 제31조 신설)

- (1) 법률의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2) 이에 따라 노말hexan, 트리크로로에틸렌 및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13종을 작업장 내에서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로 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 ~ ③ (생 략)</p> <p>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p>1. (생 략)</p> <p>2. 법 제36조에 따른 당해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p> <p>3. (생 략)</p>	<p>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p> <p>3. ~ 7. (생 략)</p>	<p>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p> <p>3. ~ 7. (현행과 같음)</p>

<p>②·③ (생략)</p> <p>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의2. (생략)</p> <p>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p> <p>3. ~ 11.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_____ 각 호 _____.</p> <p>1. 1의2. (현행과 같음)</p> <p>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_____ 구입 시 _____</p> <p>3. ~ 11.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_____ 각 호 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p>
<p>② (생략)</p> <p>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안전모</p> <p>2. 안전대</p> <p>3. 안전화</p> <p>4. 보안경</p> <p>5. 안전장갑</p> <p>6. 보안면</p> <p>7. 방진마스크</p> <p>8. 방독마스크</p> <p>9. 귀마개 또는 귀덮개</p> <p>10. 송기마스크</p> <p>11. 보호복</p> <p>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p> <p>가. 프레스</p> <p>나. 전단기</p> <p>다. 크레인</p> <p>라. 리프트</p> <p>마. 압력용기</p> <p>바. 로울러기</p> <p>사. 사출성형기</p> <p>아. 고소작업대</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p> <p>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p>

현행	개정안
<p>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p>	<p>나. <u>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u></p> <p>다. <u>보일러 입력방출용 안전밸브</u></p> <p>라. <u>압력용기 입력방출용 안전밸브</u></p> <p>마. <u>압력용기 입력방출용 파열판</u></p> <p>바. <u>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u></p> <p>사. <u>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u></p> <p>아. <u>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u></p> <p>3.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u></p> <p>가. <u>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u></p> <p>나. <u>안전화</u></p> <p>다. <u>안전장갑</u></p> <p>라. <u>방진마스크</u></p> <p>마. <u>방독마스크</u></p> <p>바. <u>송기마스크</u></p> <p>사. <u>전동식 호흡보호구</u></p> <p>아. <u>보호복</u></p> <p>자. <u>안전대</u></p> <p>차. <u>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u></p> <p>카. <u>용접용 보안면</u></p> <p>타. <u>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u></p> <p>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u></p> <p>가. <u>원심기</u></p>

현행	개정안
<p>제28조의3(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 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u>나. 공기압축기</u></p> <p><u>다. 곤돌라</u></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p> <p><u>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u></p> <p><u>나.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u></p> <p><u>다. 로울러기 급정지장치</u></p> <p><u>라. 연삭기 덮개</u></p> <p><u>마. 목재가공용 동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u></p> <p><u>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u></p> <p><u>사. 산업용 로봇안전매트</u></p> <p><u>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u></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p> <p><u>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u></p> <p><u>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u></p> <p><u>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1. 프레스</u></p> <p><u>2. 전단기</u></p> <p><u>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u></p> <p><u>4. 리프트</u></p> <p><u>5. 압력용기</u></p> <p><u>6. 곤돌라</u></p> <p><u>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8. 원심기(산업용에 한정한다)</p> <p>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p> <p>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p> <p>11.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한다)</p> <p>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p> <p>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 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p>1. 검사업무를 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p> <p>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p> <p>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대행을 거부한 경우</p> <p>4.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5. 검사결과와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p> <p>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납 및 그 무기화합물</p> <p>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정한다)</p> <p>3. 디메틸포름아미드</p> <p>4. 벤젠</p> <p>5. 2-브로모프로판</p> <p>6. 석면</p> <p>7. 6가크롬 화합물</p> <p>8. 이황화탄소</p> <p>9. 카드뮴 및 그 화합물</p> <p>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p> <p>11. 트리클로로에틸렌</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12. <u>포름알데히드</u></p> <p>13. <u>노말렉산</u></p> <p>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p> <p>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p> <p>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p> <p>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p>